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1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여성가족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1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양성평등기본법 개정(법률 제18099호, '21.4.20. 공포, '21.10.21.시행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재발방지대책 제출관련 조문정리(안 제20조 개정)

나. 재발방지 대책에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,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,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 포함(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)

다. 국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, 성희롱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등 현장점검 대상 기준마련(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)

라. 현장점검을 위해 필요 시 해당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)

마.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 대상 및 내용을 명시(안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)

바.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물적·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20조의3제3항 신설)

사. 조직문화 진단 후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에 조치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)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6호에 따라 수립된 재발 방지대책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

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성희롱 사건 발생시 조치)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
2. 성희롱 예방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
3.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해당기관 내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

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국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
2. 성희롱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
3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0조의3(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) ① 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.

1. 조직문화 진단을 요청하는 기관
2. 제31조2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,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

② 조직문화 진단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, 구성원 인식, 기타 성희롱 방지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물적·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해

당기관의 장에게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20조(성희롱 방지조치 등) ①<br/>(생 략)</p> <p>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<br/>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<br/>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<br/>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<br/>출해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6호<br/>에 따라 수립된 재발 방지대책<br/>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성희<br/>롱 고충담당자가 해당 성희롱<br/>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<br/>내에 제출해야 한다.</p> <p>③ ~ ⑦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| <p>제20조(성희롱 방지조치 등) ①<br/>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<br/>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<br/>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<br/>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<br/>출해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6호<br/>에 따라 수립된 재발 방지대책<br/>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<br/>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<br/>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의2(성희롱 사건 발생시 조<br/>치)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<br/>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<br/>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<br/>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<br/>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</p> <p>2. 성희롱 예방조치 및 성희롱<br/>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<br/>사항</p> <p>3.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</p> |

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 마련  
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해당기관 내 성희롱  
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  
요한 사항

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 
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  
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 
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
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 현장  
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국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 
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 
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 
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 
사건

2. 성희롱 사건이 반복해서 일  
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 
사건

3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 
성희롱 피해의 내용과 규모  
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  
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  
의2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  
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

<신 설>

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0조의3(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)

① 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.

1. 조직문화 진단을 요청하는 기관
2. 제31조2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 결과,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

② 조직문화 진단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, 구성원 인식, 기타 성희롱 방지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물적·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통

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연 락 처       | (02) 2100 - 6392 |